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9호
----------	------------

제출연월일: 2007. 1. 12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입찰참가수수료 폐지(2006. 1. 10)에 따른 조례의 불합리한 문구 삭제
-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삭제
-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 6. 29일자로 공포 2006.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규정내용에 따른 수수료 조정
-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월 1일 시행)으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중 어획물운반업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관됨에 따른 수수료 제정 필요
- 문화관광과 소관의 민원서류 명칭 일부 변경, 「공연법 시행규칙」 및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된 민원 항목삭제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민원 신설 반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공개수수료의 50%감면 조항의 조례 반영

### 3.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에 따른 불합리한 문구 삭제

나.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삭제

〈별표 1의 증명중 1.인감에 관한 증명 (1) (2) 삭제〉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800원 인상

〈별표 1의 증명중 7.지방세에 관한 증명 (1)(2)(3)(4) 요액 조정〉

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00원→800원 인상

〈별표 1의 증명중 10.기타 제증명 (5) 요액 조정〉

마.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00원→800원 인상

〈별표 1의 증명중 10.기타 제증명 (9) 요액 조정〉

바. 어획물운반업, 육상양식업,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관련 민원 수수료 신설

-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39) 신설〉

-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 1건 2,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0) 신설〉

- 육상양식업 허가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1) 신설〉

○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2) 신설〉

○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 변경허가 1건 2,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3.농수산 관계 (43) 신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민원서류의 명칭 변경 및 신설 민원

○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관광관계로 명칭 변경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명칭 변경〉

○ 공연장 설치허가를 공연장 등록으로 변경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1) 변경〉

○ 공연장 증축허가를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으로 변경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2) 변경〉

○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삭제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3) 삭제〉

○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삭제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4) 삭제〉

○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삭제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5) 삭제〉

○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 (9) 신설〉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의(10) 신설〉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수수료의 50%감면 〈별표 6 조정〉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해양수산과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6. 11. 24 ~ 2006. 12. 1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입찰참가신청” 을 삭제한다.

제3조제6항중 “행정정보제공수수료” 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입찰참가신청서” 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면한다.

별표 1 <증명> 중 제1호 및 동호 (1)·(2)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증명> 중 제7호 (1)세목별납세증명·(2)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3)세목별과세증명 · (4)징수유예증명의 요액 “50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한다.

별표 1 <증명> 중 제10호 (5)개별공시지가확인서 · (9)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요액 “50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에 (39)어획물 운반업 등록 · (40)어획물운반업 변경 · (41)육상양식업 허가 · (42)육상종묘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 변경허가를 신설하고, 수수료 요액을 1건 당 “5,000원 · 2,000원 · 5,000원 · 5,000원 · 2,000원”으로 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7호의 “문화공보계”를 “문화관광관계”로 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7호 (1)중 “공연

장 설치허가 · 공연장”을 “공연장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호 (3) · (4) · (5)를 삭제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7호 (6)중 “일반게임장업”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을 “등록(신고)”으로, (7)중 “신고 또는 등록”을 “등록(신고)”으로, (8)의 “일반게임장업”을 “게임제공업”으로, “신고 · 등록”을 “등록(신고)”으로 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7호에 “(9)영화상영관 등록신청 · (10)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액은 1건당 각각 “20,000원 · 5,000원”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lt;증명&gt;</b>			
<b>1. 삭제</b>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삭제	삭제	삭제	
<b>2. 신상에 관한 증명</b>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b>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b>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b>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공장등록 증명	1통	500원	
(9)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10) 시설 보유증명	1통	300원	
(11)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b>			
(1)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1통	300원	
· 토지도면	1통	300원	
·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분 열람			
· 기본료	1시간당	1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b>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b>7. 지방세에 관한 증명</b>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800원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8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4) 징수유예 증명	1통	800원	
<b>8. 회계에 관한 증명</b>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1통	300원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9. 주택에 관한 증명</b>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b>10. 기타 제증명</b>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1건	300원	
(2) 화재 증명	1건	500원	
(3)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4)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6)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 공인중개사인(중개인)중개업자	1건	5,000원	
(7) 부동산중개법 등록증 재교부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10,000원	
· 공인중개사인(중개인)중개업자	1건	3,000원	
(8) 부동산중개업 분 사무소설치 신고	1건	10,000원	
(9)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lt;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gt;</b>			
<b>1. 일반행정 관계</b>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500원	
	1건	계속3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b>2. 산림 관계</b>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b>3. 농수산 관계</b>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4)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5) 잠전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6)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7)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8)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9)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10)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11) 어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4,000원	
(12) 어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3) 관리선 사용의 지정신청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4) 어장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000원	
(15)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	1건	1,000원	
(16) 어업권 원부등 초본 교부신청	1건	2,000원	
(17)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4,000원	
(18)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19)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000원	
(20)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2,500원	
(21) 내수면 어업허가	1건	4,000원	
(22) 내수면 어업면허	1건	5,000원	
(23)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24) 어업허가 사항변경 허가	1건	1,600원	
(25) 어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26) 어업신고	1건	1,600원	
(27)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원	
(28) 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29) 어업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30) 어업휴업, 재개신고	1건	1,000원	
(31)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32)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33)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34)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고	1건	1,500원	
(35)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4,000원	
(3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3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38)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1,500원	
(3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4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1) 육상양식업 허가	1건	5,000원	
(42)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1건	5,000원	
(43)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변경 허가	1건	2,000원	
<b>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석유판매업 등록 (대리점)	1건	30,000원	
(4)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	1건	20,000원	
<b>5. 건설 관계</b>			
(1)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제외
(1)-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제외
(2)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3) 기타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 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5)-1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6)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8)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1건	1,000원	
(9) 용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	1건	1,000원	
(10)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신고	1건	500원	
(11)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3)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14) 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건	500원	
(15)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16)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17)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1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6. 보건사회 관계</b>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5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3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5,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의료기관(의원,한의원,치과의원 안마시술소,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20,000원	
(11) 의료기관(의원,한의원,치과의원 안마시술소,조산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원	
(12)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3)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1건	5,000원	
(1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1건	5,000원	
(16)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17)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8)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19)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0)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1)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5)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6)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7. 문화관광 관계</b>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삭제	삭제	삭제	
(4) 삭제	삭제	삭제	
(5) 삭제	삭제	삭제	
(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	1건	20,000원	
(7)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노래연 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9)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0)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원	
<b>8. 상수도 관계</b>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신규1건당	4,000원	다만, 정액 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 계수수료는 설 계 금 액 100분의 1 로 한다.
	갱신1건당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급수관구경	2,000원	
	40mm미만		
	급수관구경	4,000원	
	40mm이상		
(3)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000원	
	40mm미만		
	급수관구경	4,000원	
	40mm이상		
	급수관구경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10. 기타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개정 05.7.15>	1건	500원	

[별표 6]

##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개정안

###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 (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 (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 시청 -1편이 1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켤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 (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p>※ 1)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p>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확인, <u>입찰참가신청</u> 및 검사 등 -----.	제1조(목적) ----- 확인 및 검사 등 -----.
제3조 (요일) ① (생략) ⑥ 행정정보제공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3조(요일) ① (현행과 같음) ⑥정보공개수수료-----.
제5조(징수방법) ① ----- 발급신청서, <u>입찰참가신청서</u> 또는 각종 신고서등에 -----.	제5조(징수방법) ①-----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 -----.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생략) <u>&lt;신 설&gt;</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 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증명〉			
1.인감에 관한 증명				1.삭제			
(1) 인감증명	1통	500원		(1) 삭제	삭제	삭제	
(2) 인감의 개인신고	1통	500원		(2) 삭제	삭제	삭제	
-----				-----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납세증명	1통	500원		(1)세목별 납세증명	1통	800원	
(2)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500원		(2)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800원	
(3)세목별 과세증명	1통	500원		(3)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4)징수유예 증명	1통	500원		(4)징수유예 증명	1통	800원	
-----				-----			
10. 기타 제증명				10. 기타 제증명			
-----				-----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500원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800원	
-----				-----			
(9)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	500원		(9)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	800원	
-----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				-----			
3.농수산물관계				3.농수산물관계			
-----				-----			
〈신설〉				(39)어획물운반업 등록			
〈신설〉				(40)어획물운반업 변경			
〈신설〉				(41)육상양식업 허가			
〈신설〉				(42)육상종묘생산업 허가			
〈신설〉				(43)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 변경허가			
-----				-----			
7.문화공보관계				7. 문화관광관계			
(1)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1건	10,000원		(1)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원	
(2)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1건	5,000원		(2)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3)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4)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1건	1,000원		(4)삭제	삭제	삭제	
(5)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원		(5)삭제	삭제	삭제	
(6)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 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6)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	1건	20,000원	
(7)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1건	20,000원		(7)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 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등록	1건	5,000원		(8)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신설>				(9)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신설>				(10)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원	

[별표 6]

#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개정안

##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상	현행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 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개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신설>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신설>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편지 카드	현행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 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개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신설>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신설>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원본복제물(출력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전자파일의 복제물
녹음 테이프 이동 매체 이동 매체 이동 매체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제물·인화물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제물·복제물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녹음 테이프 (디오) 이동 매체 이동 매체	○ 청취 - 1건의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30분 기준)마다 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현행과 같음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시청·청취<신설>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0분(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이동 매체 이동 매체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외선 사본	현행과 같음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현행과 같음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시청·청취 - 열람 : 1,500원 - 1편 : 2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사본(중이출력물)마다 5,000원 - 1컷 25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50원 ※ 매체비용은 별도 8"×10" 150원 ○ 복제
영상	○ 시청 - 1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1MB 기준) 1회 : 200원 10분마다 3,0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현행과 같음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복제	○ 시청	<시석>

신설 ※ 1)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신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의 50% 감액

## 대통령령 제19567호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 【수산업법】

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

제92조의2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어업허가의 신청기관) ①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15, 1999.10.16>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일한 어선에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허가를 중복하여 받고자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신청기관에 당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기간의 만료등으

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일한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2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15, 1997.3.17, 1999.3.17>

③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5.7.15>

⑤원양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17>

⑥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허가받고자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7, 2005.7.1>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의 신청) ①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생략:서식> 의한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선박의 등록관청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 또는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획물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 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증과 영화상영관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